

현행	개정안
②(생략)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생략) 1.(생략)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생략) 4.(생략) 5.(생략)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삭제) 2.(현행 제3호와 같음) 3.(현행 제4호와 같음) 4.(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5 】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26.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이 조례는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농지전용업무 세부처리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 '94. 4 30)이 제정되어 동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개 항목 업무처리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별표) 개정

- 농지의 일시 전용신고의 3,300m²이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제4호)
- 농지전용신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1호 내지 제6호)
-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 (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의 별표 중 산업, 축산, 지역경제, 산림행정 분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 축산, 지역경제, 산림행정)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업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1	농가.비농가증명	1.농가.비농가 증명	농지개혁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읍.면장
2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기계류 사용허가 및 취소 2.사용료 부과징수	기계류 관리조례 제3조	"
3	농가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대여 및 수납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관한 법률	"
4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제분업의 신고 2.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신고 3.제분업의 폐지, 휴업 신고 4.대장기록관리	양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양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양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양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 " "
5	농지의 전용	1.농지의 일시 전용 신고 (3,300㎡이하) 2.농지전용신고 3.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제4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	" " "
6	축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되지, 양의 자가용 도살신고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3조 동법 규칙 제8, 9조	"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업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7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 사용허가 2. 사용료조정 및 징수 3. 주소의 이동신고 4. 시장사용 폐지신고 5. 사용취소 및 정지	시장사용조례 제1조 시장사용조례 제3조 제1호 시장사용조례 제11조 시장사용조례 제12조 시장사용조례 제13조 1항	읍.면장 " " " "
8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산허가 2.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 (허가) 반납과 반출 확인용 극인타기 및 생산확인표 작성 3. 임야외 임목벌채 신고 및 치수무역을 위한 벌채신고	산림법 제92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산림법 제90조 1항	" "

【 6 】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26.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양주군 체육진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조성 및 운영 관리에 군민 체육시설 확충과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양주군 체육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